**[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BS금융지주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년 5월 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의안 : 유상증자 결의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41,0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정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2014.07.03) 전 과거 제3거래일(2014.06.30)부터 제5거래일(2014.06.26)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2,550원의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확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4년 05월 29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4년 05월 30일 ~ 06월 05일
3.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인 8,2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29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6961431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인수단이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마.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인수단과 청약사무대행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인수단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단,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2. 신주의 청약예정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4년 07월 03일 ~ 2014년 07월 04일(2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4년 07월 03 일 ~ 2014년 07 월 04일(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4년 07월 09 일 ~ 2014년 07월 10일(2일간)

1. 주금납입예정일: 2014년 07월 14일
2. 주금납입처: 부산은행 영업부
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4.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인수회사: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청약사무대행회사: ㈜BS투자증권

1.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청약사무대행회사의 본, 지점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4년 07월 24일
2.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4년 07월 25일
3. 주권교부처: 한국예탁결제원
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sfng.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개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일(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4년 05월 29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4년 05월 30일 – 2014년 06월 05일

2014 년 5월 9 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85(범일동)

**주식회사 BS금융지주**

대 표 이 사 성 세 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